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 농산업 및 입시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학과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등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교무처-4414('26.09.23)호, '한농대 교육개선 방안(변경)' 계획수립

2. 주요 개정 내용

가. (학부 및 전공 개편) 5개 학부 18개 전공을 4개 학부 13개 학과로 개편

○ 학부를 5개학부에서 4개학부로 조정함(안 제6조제1항, 별표 1, 별표 3)

○ 현행 18개 전공을 13개 학과*로 개편(안 별표 1, 별표 3)

- 식량작물전공 등 5개 전공*은 5개 학과로 조정

* 식량작물, 채소, 원예환경시스템, 농수산비즈니스, 수산양식

- 현행 13개 전공을 통합하여 6개 학과로 통합 조정함

* 버섯전공 + 특용작물전공 → 버섯특용작물학과

* 산림전공 + 조경전공 → 산림조경학과

* 한우전공 + 낙농전공 → 한우낙농학과

* 과수전공 + 화훼전공 → 과수화훼학과

* 양돈전공 + 가금전공 + 말산업전공 → 양돈가금말산업학과

* 산업곤충전공 + 농수산물푸드테크전공 → 그린바이오푸드테크학과

- 2개 학과를 신설함

* 학과 신설(2개) : 지능형농업, 자율농업

나. (학부 및 학과별 정원 조정) 학부 및 학과별 모집정원을 조정함

○ 학과별 모집정원 조정(안 별표 1)

다. (교육과정) 교양 교과와 전문 교과의 학점 배점 기준 조정(안 제35조 제2항 제호)

○ 학점 배점기준을 교양교과 10%, 전문교과 90%에서 교양교과 10% 내외, 전문교과 90% 내외로 조정

라. (소단위 전공제) 소단위 전공제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 신설(안 제 35조의 2)

- 소단위 전공제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전공간 융복합 교육 환경조성

마. (부속기관 신설) 대학 부속기관으로 교육개발센터 신설 등(안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1항 제11호, 제19조 제4항 제2호)

바. (기타) 전공의 학과 개편에 따라 전공명을 학과로 조정하고, 전공주임교수를 학과장으로 명칭 변경함

- 전공주임교수를 학과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58조)
- 전공을 학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34조제2항, 제43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사.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의2, 제43조제1항, 제58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 대학에 작물산림학부, 스마트원예학부, 스마트축산수산학부, 농수산 융합학부를 두며, 학부별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같은조 제3항 중 “전공별”을 “학과에”로 하고, “주임교수는”을 “학과장을”으로 하고, “전공의 교무를”을 “학과의 교무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전공주임교수와”를 “학과장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농어업관련 실습실”을 “농어업관련실습시설”로 한다.

같은조 제1항 제4호 “농어업관련실습실”을 “농어업관련실습시설”로 한다.

같은조 제1항에 제11호에 “교육개발센터”를 신설한다.

같은조 제4항 제2호 중 “농어업관련실습실”을 “농어업관련실습시설”로 “국제농업교육센터”를 “국제농업교육센터, 교육개발센터”로 한다.

제34조 제2항중 “학부(전공)별”을 “학부(학과)별”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전공주임교수의”을 “학과장의”로 한다.

제35조 제2항 제1호 중 “교양 교과 10%, 전문교과 90%”를 “교양 교과 10% 내외, 전문교과 90% 내외”로 한다.

“제35조의 2(소단위 전공제) ① 농수산업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농수산 생산, 가공, 유통, 경영 등 융복합 역량의 함양을 위해 소단위 전공제를 둘 수 있다.

② 소단위 전공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제43조제1항 중 “전공별료”를 “학과별료” 한다.

제58조 조목 중 “전공주임교수에게”를 “학과장에게”로 한다.

부칙 (2026.00.00.)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의2, 제43조제1항, 제58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학부별 학과 및 입학정원

학부	해당학과	입학정원
작물산림 학부		
	식량작물학과	40 명
	버섯특용작물학과	50 명
	산림 조경 학과	45 명
스마트원예 학부		
	채 소 학과	40 명
	원예 환경 시스템 학과	40 명
	과수화훼 학과	60 명
스마트축산수산학부		
	한우낙농학과	60 명
	양돈가금말산업학과	60 명
	수산양식학과	40 명
농수산융합학부		
	그린바이오푸드테크학과	55 명
	농수산비즈니스학과	35 명
	지능형농업학과	25 명
	자율농업학과	20 명
합계		570명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및 해당학과

종 별	해당학과		비 고
농업전문 학사	작물산림학부	1. 식량작물학과	
		2. 벼선타용작물학과	
		3. 산림조경학과	
	스마트원예학부	4. 채소학과	
		5. 원예환경시스템학과	
		6. 과수화훼학과	
	스마트축산수산학부	7. 한우낙농학과	
		8. 양돈가금말산업학과	
	농수산융합학부	9. 그린바이오푸드테크학과	
		10. 농수산비즈니스학과	
		11. 지능형농업학과	
		12. 자율농업학과	
수산전문 학사		13. 수산양식학과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같은 학부 관련 학과 및 관련분야

학부	관련 학과명	관련 분야
<u>작물산림,</u> <u>스마트원예,</u> <u>스마트축산수산</u> 농수산융합 <u>(그린바이오푸</u> <u>드테크</u> 농수산비즈니스, <u>지능형농업,</u> <u>자율농업학과)</u> 학부	녹지조경과, 도시원예조경과, 조경학과, 생태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보호학과, 원예과, 원예생명산업계열, 월빙원예·골프코스관리과, 화훼원예과, 화훼장식계열, 화훼장식과, 환경원예디자인과, 환경조경계열, 화훼디자인과, 농업경영과, 농업생명과학과, 산림생명자원과, 식물응용과, 특용작물가공과, 미래농촌지도자지식농업인전공, 친환경농업기술과, 축산계열, 산림계열, 협동조합계열 등 유사학과	화원경영, 화훼장식공사업, 가드닝업, 가든디자인업, 플로리스트, 실내정원업, 화훼가공업, 화훼장식소재업, 관광농업, 조경공사업, 조경설계업, 화훼장식 교육자, 생명공학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농업 및 산림 행정직, 연구직 및 기술직 공무원, 농협, 산림조합 및 관련 협동조합, 농자재회사, 종균회사, 농산물가공 및 유통회사, 농·림·축산업 관련 신문 및 잡지사, 화원, 농약 및 비료회사, 생물환경관련 업체, 기능성식품 및 원료 개발업체, 양조관련회사, 생물환경관련 업체, 실내조경업체, 산림생산회사, 수목원, 산림 관련 개인 또는 법인 종사자, 농업관련 법인 종사자, 영농인 및 농업관련 등 유사직무
<u>스마트축산수</u> <u>산학부</u> <u>(수산양식학과)</u>	해양산업과, 해양생물자원개발과, 해양자원환경과, 해양생물과학과, 해양경찰과, 선박해양시스템과 등 유사학과	해양생물관련공무원, 해양생물관련 연구기관, 대형수족관 및 박물관, 애완동물 수족관 창업, 해양경찰, 수산업협동조합, 국공립 수산종묘 배양장, 각종 해양생물관련 기업체, 해양생물 유통업체, 해양레저산업체, 사료제조업체, 국공립공원 관리공단, 어업관련 법인 종사자, 어업인, 어업관련 등 유사직무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 ○ ○학부(○ ○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 ○ ○(인)

학위번호 : 한농대-0000-0000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 ○ ○학부(○ ○ 학과)에서 ○학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 ○ ○ (인)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 ○ ○학부(○ ○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 ○ ○ (인)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학생 징계처분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학부		학과		학년		학번	
처분내용							
이유							
관련근거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직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조(학부) ① 본 대학에 <u>작물·산림학부, 원예학부, 축산학부, 농수산융합학부, 교양학부</u>를 두며, 학부별 <u>전공</u>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③ 각 <u>전공별</u> <u>주임교수</u>를 두며, <u>주임교수</u>는 총장과 학부장의 명을 받아 해당 <u>전공</u>의 교무를 총괄한다. 제10조(교무회의) ① (생략) ② 교무회의는 총장, 각 부서장, 각 학부장 및 교수회장으로 구성하며, <u>전공주임교수와</u> 부속시설의 장 중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⑤ (생략)	제6조(학부) ① 본 대학에 <u>작물산림학부, 스마트원예학부, 스마트축산수산학부, 농수산융합학부</u>를 두며, 학부별 <u>학과</u>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u>학과에 학과장</u>을 두며, <u>학과장은</u> 총장과 학부장의 명을 받아 해당 <u>학과</u>의 교무를 총괄한다. 제10조(교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무회의는 총장, 각 부서장, 각 학부장 및 교수회장으로 구성하며, <u>학과장과</u> 부속시설의 장 중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학부 및 학과 개편 ○ 학부 명칭 변경 ○ 전공 명칭 변경 ○ 전공주임교수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전공주임교수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9조(부속시설 등) ① 본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속 시설, 부설교육기관, 부속연구소, 농어업관련 <u>실습실</u> 등을 둔다 1.~3. (생략) 4. <u>농어업관련실습실</u> 5.~10. (생략) ②~③ (생략) ④ (생략) 1. (생략) 2. 평생교육원, 농어업관련실습실,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국제농업교육센터: 교무처 제34조(재입학) ① (생략) ② 재입학은 학부(<u>전공</u>)별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재입학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학부장과 <u>전공주임교수</u>의 의견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9조(부속시설 등) ① 본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속시설, 부설교육기관, 부속연구소, <u>농어업관련실습시설</u> 등을 둔다 1.~3. (현행과 같음) 4. <u>농어업관련실습시설</u> 5.~10. (현행과 같음) <u>11. 교육개발센터</u>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평생교육원, <u>농어업관련실습시설</u>,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국제농업교육센터, <u>교육개발센터</u>: 교무처 제34조(재입학)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입학은 학부(<u>학과</u>)별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재입학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학부장과 <u>학과장의</u> 의견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명칭 추가 ○ 부속시설에 명칭 추가 ☐ 명칭 변경 ○ 전공 명칭 변경 ○ 전공주임교수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5조(교육과정) ① (생략) ② (생략) 1. 학점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 전문교과 90%로 하고, 전문교과의 50%이상은 실험·실습을 과한다. 2. (생략) ③~⑤ (생략)	제35조(교육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학점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 <u>내외</u>, 전문교과 90% <u>내외</u>로 하고, 전문교과의 50%이상은 실험·실습을 과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u>제35조의 2(소단위 전공제) ① 농수산업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농수산 생산, 가공, 유통, 경영 등 융복합 역량의 함양을 위해 소단위 전공제를 둘 수 있다.</u> <u>② 소단위 전공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u>	□ 자구 추가 ○ 교양교과, 전문교과 학점 배점 기준에 자구 추가 □ 조항 신설 ○ 소단위 전공제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 명칭 변경 ○ 전공 명칭 변경
제43조(졸업 및 수료) ① 졸업은 제36조 제3항의 요건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공별로 부여된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시험을 따로 실시하거나 현장	제43조(졸업 및 수료) ① 졸업은 제36조 제3항의 요건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u>학과</u>별로 부여된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시험을 따로 실시하거나 현장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실습 등의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58조(결석신고) 학생이 질병, 사고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학부장 또는 <u>전공주임교수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습 등의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58조(결석신고) 학생이 질병, 사고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학부장 또는 <u>학과장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u>(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의2, 제43조제1항, 제58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u>	☐ 명칭 변경 ○ 전공주임교수 명칭 변경 ☐ 시행일
[별표1] 학부별 전공 및 입학정원	[별표1] 학부별 <u>학과</u> 및 입학정원	☐ 학부 및 학과개편 ○ 학부명칭 변경 ○ 전공개편(통합,재배치,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학부	해당전공	입학정원	학부	해당 <u>학과</u>	입학정원	○ 학과별 모집정원
작물·산림학부		150명	작물산림학부			
	식량작물전공			식량작물 <u>학과</u>	40 명	
	특용작물전공			<u>버섯특용작물학과</u>	50 명	
	버섯전공			산림조경 <u>학과</u>	45 명	
	산림전공		<u>스마트</u> 원예학부			
	조경전공			채 소 <u>학과</u>	40 명	
원예학부		150명		원예 환경시스템 <u>학과</u>	40 명	
	채소전공			<u>과수화훼학과</u>	60 명	
	원예 환경시스템전공		<u>스마트</u> 축산 <u>수산</u> 학부			
	과수전공			<u>한우낙농학과</u>	60 명	
	화훼전공			<u>양돈가금말산업학과</u>	60 명	
축산학부		135명		수산양식 <u>학과</u>	40 명	
	한우전공		농수산융합학부			
	낙농전공			<u>그린바이오</u> 푸드테크 <u>학과</u>	55 명	
	양돈전공			농수산비즈니스 <u>학과</u>	35 명	
	가금전공			<u>지능형농업학과</u>	25 명	
	말산업반려동물전공			<u>자율농업학과</u>	20 명	
농수산융합학부		135명	합계		570명	
	농수산푸드테크전공					
	농수산비즈니스전공					
	산업곤충전공					
	수산양식전공					
교양학부						
합계		570명				
[별표3] 전문 학사학위의 종별 및 해당전공			[별표3] 전문 학사학위의 종별 및 해당 <u>학과</u>			☐ 학부 및 학과개편 ☐ 학부명칭 변경 ☐ 전공개편(통합,재배치,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종별		해당전공		비고	종별		해당학과		비고
농업전문 학사	작물·산림 학부	1. 식량작물전공			농업전문 학사	작물산림학부	1. 식량작물 <u>학과</u>		
		2. 특용작물전공					2. <u>버섯특용작물학과</u>		
		3. 버섯전공					3. <u>산림조경학과</u>		
		4. 산림전공					4. <u>채소학과</u>		
		5. 조경전공					5. <u>원예환경시스템학과</u>		
	원예 학부	6. 채소전공				6. <u>과수화훼학과</u>			
		7. 원예 환경시스템전공				7. <u>한우낙농학과</u>			
		8. 과수전공				8. <u>양돈가금말산업학과</u>			
		9. 화훼전공				9. <u>그린바이오푸드테크학과</u>			
	축산학부	10. 한우전공				10. <u>농수산비즈니스학과</u>			
		11. 낙농전공				11. <u>지능형농업학과</u>			
		12. 양돈전공				12. <u>자율농업학과</u>			
		13. 가금전공				13. <u>수산양식학과</u>			
		14. 말산업반려동물전공							
	농수산융합학부	15. 농수산푸드테크전공							
		16. 농수산비즈니스전공							
		17. 산업곤충전공							
수산전문 학사	18. 수산양식전공								
[별표4] 같은 학부 관련 학과 및 관련분야				[별표4] 같은 학부 관련 학과 및 관련분야				□ 학부 및 학과개편	

현행			개정안			비고
학부	관련 학과명	관련 분야	학부	관련 학과명	관련 분야	○ 학부, 학과명칭 변경
작물·산림, 원예, 축산 농수산융합 (농수산가공, 농수산비즈 니스, 산업곤충전 공)학부	녹지조경과, 도시 원예조경과, 조경 학과, 생태조경학 과, 산림자원학과, 산림경영학과, 산 림보호학과, 원예 과, 원예생명산업 계열, 월빙원예· 골프코스관리과, 화훼원예과, 화훼 장식계열, 화훼장 식과, 환경원예디 자인과, 환경조경 계열, 화훼디자인 과, 농업경영과, 농 업생명과학과, 산 림생명자원과, 식 물응용과, 특용작 물가공과, 미래농 촌지도자지식농업 인전공, 친환경농 업기술과, 축산계 열, 산림계열, 협동 조합계열 등 유사 학과	화원경영, 화훼장식 공사업, 가드닝업, 가든 디자인업, 플 로리스트, 실내정원 업, 화훼가공업, 화 훼장식소재업, 관광 농업, 조경공사업, 조경설계업, 화훼장 식 교육자, 생명공 학관련 기업 및 연 구소, 농업 및 산림 행정직, 연구직 및 기술직 공무원, 농 협, 산림조합 및 관 련 협동조합, 농자 재회사, 종균회사, 농산물가공 및 유통 회사, 농·림·축산업 관련 신문 및 잡지 사, 화원, 농약 및 비료회사, 생물환경 관련 업체, 기능성 식품 및 원료 개발 업체, 양조관련회사, 생물환경관련 업체, 실내조경업체, 산림 생산회사, 수목원, 산림 관련 개인 도	작물산림, <u>스마트원예</u> , <u>스마트축산수산</u> 농수산융합 (<u>그린바이오푸 드테크</u> , 농수산비즈니 스, <u>지능형농업</u> , <u>자율농업학과</u>) 학부	작동	작동	
			<u>스마트축산수 산학부</u> (<u>수산양식 학과</u>)	작동	작동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는 법인 종사자, 농업관련 법인 종사자, 영농인 및 농업관련 등 유사직무		
농수산융합 학부 (수산양식 전공)	해양산업과, 해양생물자원개발과, 해양자원환경과, 해양생물과학과, 해양경찰과, 선박해양시스템과 등 유사학과	해양생물관련공무원, 해양생물관련연구기관, 대형수족관 및 박물관, 애완동물 수족관 창업, 해양경찰, 수산업협동조합, 국공립 수산종묘 배양장, 각종 해양생물관련 기업체, 해양생물 유통업체, 해양레저산업체, 사료제조업체, 국공립공원 관리공단, 어업관련 법인 종사자, 어업인, 어업관련 등 유사직무		
[별지 제4호 서식] 학생 징계처분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학생 징계처분 통지서	☐ 학부 및 학과개편 ☐ 학과변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학부		전공		학년		학번		학부		<u>학과</u>		학년		학번			
처분내용								처분내용									
이 유								이 유									
관련근거								관련근거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직인)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직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개정 2013. 5. 2.(제188호)
개정 2015. 6. 5.(제210호)
개정 2015. 12. 14.(제219호)
일부개정 2016. 3. 2.(제228호)
일부개정 2016. 9. 25.(제238호)
일부개정 2017. 1. 19.(제244호)
전부개정 2017. 5. 15.(제251호)
일부개정 2018. 10. 11.(제281호)
일부개정 2019. 2. 14.(제292호)
일부개정 2019. 10. 15.(제314호)
일부개정 2020. 4. 10.(제325호)
일부개정 2021. 5. 12.(제370호)
일부개정 2021. 12. 22.(제388호)
일부개정 2021. 12. 31.(제405호)
일부개정 2022. 04. 20.(제440호)
일부개정 2022. 5. 27.(제444호)
일부개정 2022. 12. 29.(제514호)
일부개정 2023. 7. 11.(제531호)
일부개정 2024. 2. 21.(제541호)
전부개정 2024. 10. 8.(제547호)
일부개정 2026. 5. 22.(제568호)
일부개정 2026. 00. 00.(제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이하 “농수산대학교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과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1절 총장, 교직원 등

제3조(총장) ① 본 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의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③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후 총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원 등) ① 대학에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 및 강사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②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강사는 학생 교육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④ 교원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되,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명예교수등) ①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본 대학에 명예교수등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교수등의 자격은 농어업에 관한 기관·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다년간의 종사 경력이 있는 자와 선도적으로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명예교수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교수등은 총장이 위촉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⑤ 명예교수등의 위촉 및 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교육조직 등

제6조(학부) ① 본 대학에 작물산림학부, 스마트원예학부, 스마트축산수산학부, 농수산융합학부를 두며, 학부별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00.00.>

② 학부에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부의 교무를 총괄한다.

③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총장과 학부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0.00.>

제7조(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① 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은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되, 전문학사과정의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③ 교육과정은 공통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한다.

1. 공통과정 : 전체공통과목과 계열공통과목으로 구성

2. 전문과정 : 전공심화과목으로 구성

④ 전공심화과정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8조(행정조직 등) 이 학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절 위원회 등

제9조(대학평의위원회) ① 본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대학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령, 기본운영규정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에 관해 총장, 의장 또는 교수회가 부의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무회의는 총장, 각 부서장, 각 학부장 및 교수회장으로 구성하며, 학과장과 부속시설의 장 중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③ 교무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기본운영규정, 학칙,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의한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
3. 교수회에서 부의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교무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교수회) ① 본 대학의 교육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전임교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교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총장은 교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대학인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직급 결정을 포함한다)
2. 연구년제 교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 소속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원 인사와 관련하여 총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과 교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수회가 추천하는 부교수 이상 2인의 교원 및 총장이 임명하는 부교수 이상 3인의 교원을 포함하여 전체 7인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입시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 등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회, 학생단체 및 학생 개인의 활동 등을 지도·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졸업생지도위원회) ① 졸업생의 학비지원 조건 이행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졸업생지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졸업생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①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입학사정, 자체평가 등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원자의 자격요건
3. 매 학년도별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4. 전공심화과정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
5. 그 밖에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학사운영심의위원회) ① 학사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기타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기관협의회 등 기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부속시설 및 산학협력단

제19조(부속시설 등) ① 본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속시설, 부설교육기관, 부속연구소, [농어업 관련실습시설](#) 등을 둔다. <개정 2026.00.00.>

1. 기숙사
2. 도서관
3. 평생교육원

4. [농어업관련실습시설](#) <개정 2026.00.00.>

5. 대학직장예비군부대

6. 창업보육센터

7.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

8. 영농·영어정착지원센터

9. 기후변화교육센터

10. 국제농업교육센터

11. [교육개발센터](#) <신설 2026.00.00.>

② 부속시설 및 부설교육기관 등의 장은 교직원 중 총장이 보한다.

③ 부속시설 및 부설교육기관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부속시설의 지도감독 부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숙사, 도서관, 대학직장예비군부대, 창업보육센터, 영농·영어정착지원센터: 교학과

2. 평생교육원, [농어업관련실습시설](#),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국제농업교육센터, [교육개발센터](#): 교무처 <개정 2026.00.00.>

제20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하부 조직으로 하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운영 일반

제21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총장이 대학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기 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절 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3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휴가 : 6월~ 8월 사이

2. 동계휴가 : 12월~ 다음해 2월 사이

3. 개교기념일(3월 20일)

4. 법정공휴일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보충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편입생은 2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학사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5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학생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휴학기간과 정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입학 및 등록

제26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27조(입학자격) ① 신입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편입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
2.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제28조(입학전형) ① 입학생 선발 방법과 절차는 입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② 입학전형에 고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입학허가 및 등록 등) ① 입학허가는 입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학비지원조건 이행 보증을 위한 교육훈련비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학적관리

제30조(전공배정 및 전과 등) 동 학칙 제6조에 따른 학생의 전공배정 및 전과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병역의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휴학은 1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계속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 만료일 전에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병역의 의무복무로 인한 경우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신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 ⑥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학년 또는 교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⑦ 휴학 기간, 복학시기 등 휴·복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제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결석계 제출 없이 결석이 4주년을 초과한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4. 다른 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입학한 자
5.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
6.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7. 학업성취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총장이 정하는 자
8. 재학 중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9. 사망 등으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적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재입학) ①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자퇴 및 제적 후 2년 이내의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8호에 따른 학사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 제60조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퇴학한 자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은 학부(학과)별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6.00.00.>

③ 재입학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학부장과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④ 기타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교과 개설 및 신청

제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과, 코스교육, 현장실습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②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1. 학점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 내외, 전문교과 90% 내외로 하고, 전문교과의 50% 이상은 실험·실습을 과한다. <개정 2026.00.00.>

2.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눈다.

③ 코스교육은 농어업관련 특정기술의 실기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1주 단위로 편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은 국내·국외의 선진농장·어장 또는 농어업관련기관·법인단체 등에서 영농·영어를 체험하면서 부과된 과제를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1. 현장실습은 단기 현장실습과 장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2. 단기 현장실습은 6주 이내로 하고, 장기현장실습은 8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 2(소단위 전공제) ① 농수산업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농수산 생산, 가공, 유통, 경영 등 융복합 역량의 함양을 위해 소단위 전공제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② 소단위 전공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36조(이수단위 등)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강의는 1학기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실기·체육은 1학기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되, 교과과정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코스교육, 단기현장실습은 1주 이상을 1학점으로 하며, 장기현장실습 이수단위 및 학점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은 1.7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과목, 코스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이수 또는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④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⑤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⑥ 입학 전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⑦ 본교 주관사업에 따라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졸업 요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교과목 개설) ① 매 학기의 개설 교과, 코스교육 및 현장실습 등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및 원격수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절차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절 시험과 성적

제39조(시험과 출석)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정기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정기시험 : 중간고사, 기말고사
2. 비 정기시험 : 추가시험, 재시험 등

②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0조(추가시험) ①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의 성적등급은 B+ 이하로 하되, 추가시험의 사유가 공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재시험) ①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정기시험결과 과락한 자
2. 시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락된 자

② 재시험 성적의 등급은 D+이하로 한다.

③ 재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코스교육, 현장실습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 등은 “P”(합격), “NP”(불합격)으로 하며 성적평점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③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이거나 “P”일 때에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6절 수료와 졸업

제43조(졸업 및 수료) ① 졸업은 제36조 제3항의 요건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과별로 부여된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시험을 따로 실시하거나 현장실습 등의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수강 등을 거쳐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도 졸업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4조 (명예졸업) ① 본 대학에 입학하였던 재적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절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제45조(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4에서 정한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분야에서 재직 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사람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위심화과정이 설치된 과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농수산물 과 같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과를 졸업한 사람

제46조(학사학위 종류와 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공심화과정 입학 시 인정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학사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제8절 위탁 및 수탁교육, 특별과정 등

제47조(위탁교육)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제48조(수탁교육) ① 총장은 타 대학, 타 기관 또는 외국 교육기관(이하 “위탁의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생을 받아 이를 교육시킬 수 있다.

② 수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의뢰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청강허용) ① 중졸 이하의 자로서 지역 농어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질과 본 대학의 정규 과정을 이수할 수학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청강생이 본 대학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④ 청강생의 모집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비정규교육과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정규교육과정은 교육 수요와 본 대학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장 학생

제1절 학생활동

제51조(학생회) ① 건전한 학생생활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자치활동을 통한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본 대학의 학생은 학생회 회원이 된다.

③ 학생회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④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52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 대학의 전임교원 1인 이상을 지도교수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내·외 집회

2. 학내·외 광고, 인쇄물 부착 및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54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 발행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제55조(학생 생활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의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상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2절 규율

제56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7조(기숙사 생활) ① 학생은 학기 중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기숙사 외 생활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 기숙사 내 질서유지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입실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기숙사 생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칙, 상벌, 자치조직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결석신고) 학생이 질병, 사고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학부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제59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본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 대학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수업이나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3.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 손괴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한 자
4. 학생지도위원회, 지도교수 등 교직원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언어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

6.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7.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을 행한 자
8. 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1. 근신은 7일에서 1개월 이내로 한다.
2. 유기정학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3. 무기정학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교학과장은 학생이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교학과장은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교학과장은 징계혐의가 있는 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통지의 제목
2. 학생의 소속, 학번과 성명
3. 징계혐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징계처분의 근거
4. 제3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 부서, 의견제출 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학생지도위원회는 별표 6의 학생 징계 양정 기준을 참고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학생의 평소 행동, 공적,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 참작할 수 있다.

⑦ 교학과장은 징계대상 학생에게 학생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총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하고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징계 대상 학생과 소속 학부장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한다. 또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징계 대상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도 징계처분의 여부와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⑨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처

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학생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소속 학부장이 징계 해제 의견서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징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이때 총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61조(학사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1.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5”에 미달인 자
2. 한 학기 2개 과목이상 성적이 “F”인 자
-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그 학생의 학기말 성적표상에 “학사경고”라고 표시한다.
- ③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서 NP등급을 받은 자는 졸업을 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학생 지원

제62조(수업료 등 지원) ① 학생에게는 농수산대학교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을 지급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업료는 학생 자부담으로 한다.

② 피복, 침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지급품과 대여품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3조(장애학생 지원) ① 총장은 장애 학생이 학업수행 및 대학생활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② 총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③ 학생지도위원회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졸업생 지원

제64조(병역특례 및 영농·영어정착 지원) ① 총장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필요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졸업생지원) 총장은 졸업생의 영농·영어정착에 필요한 지원 수단을 강구한다.

제5장 납입금과 장학금

제66조(납입금) ① 총장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거나 지원되는 학비를 제외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학기 등록 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금 청구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7조(장학금) ① 총장은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등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칙의 개정

제68조(학칙의 개정절차) 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경우 공고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전공고를 거친 학칙 개정안은 교무회의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안을 작성한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해 작성한 학칙 개정 최종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 총장이 공포한다.

제7장 보칙

제69조(제 규정 제정 및 변경)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3.5.2.)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5.)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4.)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경우 제26조 제2항 1호의 규정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6.9.25.)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및 제26조제4항제2호 장기현장 실습 기간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0.11.)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 제적에 관한 사항 및 제27조제4항 졸업에 관한 사항 및 제34조제1항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0.15.)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5.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 설치학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 개정 규정인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교육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 개정 규정인 교육개발센터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20.)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3, 별표 4의 어류양식전공과 수산생물양식전공을 수산양식전공으로 통합하는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29.)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1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3의 말산업전공과 농수산가공전공을 말산업반려동물전공, 농수산푸드테크전공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2.2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8.)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5.22.)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0.00)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의2, 제43조제1항, 제58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부별 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2026.00.00.>

학부	해당 <u>학과</u>	입학정원
작물산림 학부		
	식량작물 <u>학과</u>	<u>40 명</u>
	<u>버섯특용작물학과</u>	<u>50 명</u>
	<u>산림조경 학과</u>	<u>45 명</u>
<u>스마트</u> 원예 학부		
	<u>채 소 학과</u>	<u>40 명</u>
	<u>원예환경시스템 학과</u>	<u>40 명</u>
	<u>과수화훼 학과</u>	<u>60 명</u>
<u>스마트</u> 축산 <u>수산</u> 학부		
	<u>한우낙농학과</u>	<u>60 명</u>
	<u>양돈가금말산업학과</u>	<u>60 명</u>
	<u>수산양식학과</u>	<u>40 명</u>
농수산융합학부		
	<u>그린바이오푸드테크학과</u>	<u>55 명</u>
	농수산비즈니스 <u>학과</u>	<u>35 명</u>
	<u>지능형농업학과</u>	<u>25 명</u>
	<u>자율농업학과</u>	<u>20 명</u>
합계		570 명

[별표 2] 학업성적의 분류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60점 미만	0
P	Pass	평점 불산입
NP	Non-pass	평점 불산입

[별표 3]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및 해당 학과 <개정 2026.00.00.>

종 별	해 당 학 과		비 고
농업전문 학사	작물산림학부	1. 식량작물 <u>학과</u>	
		2. 벼·특용작물 <u>학과</u>	
		3. 산림조경 <u>학과</u>	
	<u>스마트원예학부</u>	4. 채소 <u>학과</u>	
		5. 원예환경시스템 <u>학과</u>	
		6. 과수화훼 <u>학과</u>	
	<u>스마트축산수산학부</u>	7. 한우·농축 <u>학과</u>	
		8. 양돈·가금·말산업 <u>학과</u>	
	농수산융합학부	9. 그린바이오푸드테크 <u>학과</u>	
		10. 농수산비즈니스 <u>학과</u>	
		11. 지능형농업 <u>학과</u>	
		12. 자율농업 <u>학과</u>	
수산전문 학사		13. 수산양식 <u>학과</u>	

[별표 4] 같은 학부 관련 학과 및 관련분야

학부	관련 학과명	관련 분야
작물산림, <u>스마트원예</u> , <u>스마트축산수산</u> 농수산융합 (<u>그린바이오푸</u> <u>드테크</u> , 농수산비즈니스, <u>지능형농업</u> , <u>자율농업</u>) 학부	녹지조경과, 도시원예조경과, 조경학과, 생태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보호학과, 원예과, 원예생명산업계열, 월빙원예·골프코스관리과, 화훼원예과, 화훼장식계열, 화훼장식과, 환경원예디자인과, 환경조경계열, 화훼디자인과, 농업경영과, 농업생명과학과, 산림생명자원과, 식물응용과, 특용작물가공과, 미래농촌지도자지식농업인전공, 친환경농업기술과, 축산계열, 산림계열, 협동조합계열 등 유사학과	화원경영, 화훼장식공사업, 가드닝업, 가든디자인업, 플로리스트, 실내정원업, 화훼가공업, 화훼장식소재업, 관광농업, 조경공사업, 조경설계업, 화훼장식 교육자, 생명공학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농업 및 산림 행정직, 연구직 및 기술직 공무원, 농협, 산림조합 및 관련 협동조합, 농자재회사, 종균회사, 농산물가공 및 유통회사, 농·림·축산업 관련 신문 및 잡지사, 화원, 농약 및 비료회사, 생물환경관련 업체, 기능성식품 및 원료 개발업체, 양조관련회사, 생물환경관련 업체, 실내조경업체, 산림생산회사, 수목원, 산림 관련 개인 또는 법인 종사자, 농업관련 법인 종사자, 영농인 및 농업관련 등 유사직무
<u>스마트축산수산학부</u> (<u>수산양식학과</u>)	해양산업과, 해양생물자원개발과, 해양자원환경과, 해양생물과학과, 해양경찰과, 선박해양시스템과 등 유사학과	해양생물관련공무원, 해양생물관련 연구기관, 대형수족관 및 박물관, 애완동물 수족관 창업, 해양경찰, 수산업협동조합, 국공립 수산종묘 배양장, 각종 해양생물관련 기업체, 해양생물 유통업체, 해양레저산업체, 사료제조업체, 국공립공원 관리공단, 어업관련 법인 종사자, 어업인, 어업관련 등 유사직무

[별표 5]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종별

모 집 단 위	학위종별
농업계열 (작물, 원예, 산림, 축산, 농수산융복합 분야)	농학사
수산계열	수산학사

[별표 6] 학생 징계 양정 기준

위반 행위 정도 및 과실 여부 징계사유	위반 행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 행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 행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제60조(징계) 제1항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제7호는 제외)	근신	근신 또는 유기정학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퇴학
제60조(징계) 제1항의 제7호에 해당 하는 경우	근신 또는 유기정학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퇴학	퇴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00.00.>

제 호

학 위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 ○ ○학부(○ ○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 ○ ○(인)

학위번호 : 한농대-0000-0000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00.00.>

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 ○ ○학부(○ ○ 학과)에서 ○학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 ○ ○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00.00.>

제 호

학 위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 ○ ○학부(○ ○ 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 ○ ○ (인)

학생 징계처분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학부		<u>학과</u>		학년		학번	
처분내용							
이유							
관련근거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직인)							